

부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1가단304348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857,56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2.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1. 2. 19.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12. 7. 접수 제57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① 피고 B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10. 11.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B가 D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10. 6.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1. 1. 21. 주식회사 D에 13,857,566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 13,857,5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2.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 12. 7. 접수 제57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2020. 10. 6.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1. 21.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피고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H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 84.918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성시 E 대 112273.9㎡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 비율 : 112273.9분의 59.0558 끝.